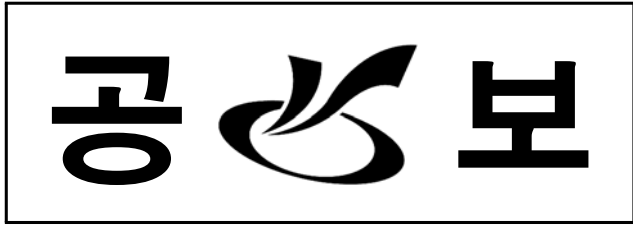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61호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61호 재활용품 선별업무 대행업체  
모집 공고 ..... 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64호 공시송달공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67호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1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73호 압류 차량 매각 공매 공고 ..... 15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 1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61 호

**재활용품 선별업무 대행업체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선별처리위탁업체를 선정코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내용**

-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
- 대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12.31까지(연간단위로 재계약)
- 업무범위 :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선별 및 잔재쓰레기 처리
- 예정단가 : 재활용품 선별처리비(잔재쓰레기 처리비 포함) 21,057원/톤 이하  
※ 재활용품 연간반입예정량 6,206톤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08. 10. 15(수)~10. 21(화)(5일간 봉인 후 제출)

**3.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오수팀(☎560-4422~7)

**4. 접수방법 :** 인편(공무원 근무시간내 접수하며, 우편 등 기타방법으로 불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확인될 시 선정 취소함

**5. 응모자격**

- 사무실과 선별장소는 인천지역(강화·옹진군 제외) 및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함
- 인천 서구 재활용품 1년 중 1일 최대 발생량의 10일간 입하량인 172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부지확보(면적:2,500㎡이상)

- 선별장내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을 계근할 수 있는 계근대 및 처리능력 10마력(12톤/시간)이상, 길이가 30m이상인 자동선별기기 확보
- 선별 후 잔재쓰레기 처리대책의 확보(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 제출 가능)
- 지방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

**6. 적격업체 선정**

- 심사방법 : 서류 및 현지 실사
- 심사기준
  - 처리시설능력(재활용품의 선별처리능력, 분류가능 품목수, 처리단가 및 재정상태 등)
  - 부지확보(반입 재활용품의 보관능력)
  - 운송여건
  - 잔재쓰레기 처리대책의 안정성
  - 공신력(공공기관 거래실적, 행정처분 등) 등
- 심사 및 선정
  - 제출된 서류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참가자격에 미달되는 부적격자 (서류미필자 포함)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1개업체 선정
- 선순위자 계약 불응시 후순위자로 선정
- 선정결과 : 개별통지

**7. 계약체결 : 2008. 11월중**

**8. 계약자의 의무**

-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한 재활용 가능 생활폐기물에 대한 원활한 선별 및 잔재쓰레기 자체 처리
- 선별처리 계약(협약)이행보증
  - 계약(협약)금액의 10%이상(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제출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보험(월 평균 512톤 기준) 증권을 본 계약체결 후 제출(연간단위)

- 산출기초 : 512톤 × 2개월 × 31,000원 × 1.5 = 47,616,000원
- 계약기간 : 2008. 11월 - 2008. 12. 31
- 이행보증기간 : 2008. 11월 - 2008. 12. 31

-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고, 익월 5일까지 선별 처리실적 제출
-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 된 잔재쓰레기는 계약자 책임하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 잔재 쓰레기 처리 근거를 첨부하여 매달 5일이내 결과 보고
- 정당한 지시 감독과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선별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재정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 9. 구비서류

-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업체 응모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개요(선별분류 품목 명기)
  - 사업자 등록증
  - 재정상태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등
  - 처리실적 : 최근 2년간 처리실적(증빙서류 첨부)
  - 운반거리 명시(인천 서구청~선별장)
  - 선별인원 : 피고용자 의료보험가입 증명원 등
- 선별장 부지 현황
  - 지적도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토지대장등본 1부
  - 토지 등기부등본(임차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시설물 배치 평면도 1부
- 차량 및 장비현황(차량, 계근대, 자동화선별기기 등) 서류 1부
- 업체 행정처분 사항
- 기타 응모 관련 증빙서류 등

1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선별업무 민간위탁 참여 신청서

상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일반 현황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시설 보유 현황	기기명	자동선별기	감응기	압축기	파쇄기	소각로	계근대
	처리능력						
	차종별	집게차		로우더	트럭	기타	
	용량						
사업장 현황	면적	소유형태		선별인원	거리		
	m <sup>2</sup>	자가( ) 임대( )		명	서구청에서 km		
처리 대행료	일금 _____ 원(일금 _____ 원)/톤						
기타 제출 서류							

2008. . . .

신청자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재활용품 선별업무 민간위탁 계약(협약)서

### 제1조(목적 및 정의)

- ① 본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갑” 이라 칭하고 선별처리업체 대표 ○○○를 “을” 이라 칭한다.
- ② 본 계약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수집·운반한 재활용품의 선별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선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재활용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7조 제1항제5호 관련 별표 2」에 의한다.
- ④ 제③항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이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른다.

###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갑”과 “을”은 이 계약이 깨끗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공익목적의 계약임을 명심하고 계약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갑”이 지정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여 반입한 재활용품 선별·처리와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한 잔재쓰레기의 운반·처리에 한한다.
- ② “갑”은 “을”에게 시책에 따라 재활용품 물량을 정해줄 수 있다.

### 제4조(대행구역)

“을”은 “갑”의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선별업무를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기간)

- ①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간단위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계약전까지는 기존계약조건으로 한다.
- ② “갑”이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민간위탁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민간위탁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본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선별수수료, 잔재쓰레기 처리비 등은 기존계약 조건에 의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을”은 본 계약체결즉시 장비, 인력, 선별방법, 잔재쓰레기 처리 등 재활용품 선별업무 대행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활용품 선별·처리 등)**

- ① “을”은 재활용품 선별에 필요한 인원·부지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자원가능한 재활용품이 잔재쓰레기로 처리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재활용품을 최대한 성실히 선별하여야 한다.
- ③ 선별한 재활용품은 “을”의 책임 하에 처분하며 그 수익금은 “을”의 소유로 한다.
- ④ “을”은 반입된 재활용품의 잔재쓰레기 발생을 40%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월 선별실적과 수도권매립지 또는 청라소각장 반입 계량표를 첨부하여 잔재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⑤ “을”은 선별된 재활용품이 사업장내에 누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장내 방진시설, 배수문제, 침출수 처리문제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사업장을 관리·수행하여야 한다.
- ⑥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한 잔재쓰레기는 “을”의 책임하에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계근)**

- ① “갑”은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에 있어서 “갑”이 지정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수거하여 “갑”과 “을”이 협의한 장소까지 운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수집운반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갑”이 지정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수집·운반한 재활용품의 양을 계근할 수 있도록 “을”이 지정한 장소에 “을”의 책임 하에 계근대를 설치·운영한다.
- ③ “갑”의 재활용품 반입량 산정은 “을”의 계량측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규정에 적법하게 설치된 계근대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하며 “갑”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계량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작업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

- ①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의 확보는 계약기간 중 수시로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갑”의 인구증가 등의 사유로 시설·장비 등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은 책임지고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실 등의 소재지)**

“을”은 선별업무대행에 필요한 사무실 전화 및 집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 확보 등 시설·장비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인력관리)**

“갑”은 “을”의 종사인력을 지도·감독 및 교육할 수 있으며, “갑”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민원발생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락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및 이행보증)**

- ① 계약기간 중 “을”이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23조 제①항의 계약해지로 “갑”에게 재정상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제7조의 규정을 미 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을”은 재활용품 반입예정량(월평균 512톤)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금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의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재활용품 선별업무 위탁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①항에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가입 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④ “을”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폐기물의 처리단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금액을 조정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3조(대행수수료)**

- ① 대행수수료는 “갑”이 지정한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하여 “을”이 계근한 월별량에 대해서 익월에 지급하며 선별대행수수료는 **톤당 ₩00,000원(일금00,000원)**으로 한다.
- ② 선별 후에 발생한 잔재쓰레기 처리장소까지의 운반비용 및 처리비는

“을” 이 부담한다.

③ “갑” 은 대행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발생시 지급을 보류 하거나 대행료를 감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1. 잔재쓰레기를 익월 5일까지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 2. “을” 의 귀책사유로 민원의 발생시 이를 해소할 때 까지
- 3. 재활용품 선별실적, 잔재쓰레기 배출·처리실적 등 허위보고 발생시
- 4.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잔재쓰레기의 양이 40%를 초과 한 경우 초과한 잔재량에 톤당 대행료를 곱한 금액을 감하여 지급

**제14조(부담)**

“을” 은 업무운영상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재해보상금 등 일체의 부담에 대하여 모두 책임을 진다.

**제15조(사고책임)**

“을” 은 업무대행 중 또는 기타 제반업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상황을 지체 없이 “갑”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의무 양도금지)**

“을” 은 “갑” 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및 하도급담보제공 등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갑” 은 “을” 의 재활용품 선별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과징금 및 행정처분 외에도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을 익월 대행수수료 지급시 감액한 후 지급한다.

- 1. 계량전표의 임의조작 등의 부당한 행위로 대행수수료를 증가시키기 위한 부당행위 적발시에는 본계약 대행수수료 **톤당 단가 00,000원**(단가 조정 시에는 조정된 단가 적용)을 기준으로 적발된 재활용품량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
- 2. “을” 이 재활용품 선별업무소홀 또는 기타 대행계약에 대한 현저한 불이행으로 “갑” 으로부터 경고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1회 적발시 경고장 발송, 2회 적발시 50만원, 3회이상 적발부터는 100만원

**제18조(계약조건의 조정)**

- ① “갑”은 재활용품 수집운반방법의 개선 등으로 인한 잔재쓰레기의 발생이 감소되거나 단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갑”과 “을”은 충분한 입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계약시 계약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 등을 감안하여 쌍방협의로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준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을”은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잔재쓰레기의 최소화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내 재활용품 또는 잔재쓰레기가 장기간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을”은 폐기물관련법규, 조례, 규칙 등 제반법규는 물론 “갑”의 사업방침 및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 선별업무 및 처리실적을 작성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을”은 종사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을”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법상의 권익 등 문제는 전적으로 “을”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 ⑥ “을”은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제반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선별업무 수행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종사원에게 필요한 샤워장, 휴게실 등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⑦ “을”은 사업장내에 파업 등 기타의 사유로 선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초래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갑”의 선별업무 위탁대행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대책을 수립·운영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 및 지도·감독)**

- ① “갑”은 민간위탁한 선별업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을”의 사업장에 대한 수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선별업무를 적정처리 여부를 검사 및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검사 및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 은 “갑” 이 정한 제반규정 및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지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제21조(재활용품 선별업무 처리실적 등의 제출)**

① “을” 은 제7조에 의하여 처리한 재활용품 반입량, 선별량, 잔재쓰레기 발생량 등에 대한 월별실적을 익월 5일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 이 “을” 에게 선별업무대행과 관련한 아래사항 등에 대하여 요구할 경우 “을” 은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월별 재활용품 반입 및 선별처리 실적
- 2. 대행인력의 고용 및 근무상황
- 3. 시설·장비 등의 운영실적
- 4. 기타 “갑” 이 선별업무에 필요한 자료 등

**제22조(선별업무의 대집행)**

“갑” 은 “을” 이 본 계약에 의한 제반업무를 5일이상 수행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품 선별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갑” 이 일방적으로 집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요된 비용은 “갑” 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을” 이 부담한다.

**제23조(계약해지)**

① “갑” 은 “을” 이 아래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 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을” 이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거나 “갑” 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 2. “갑” 의 정당한 지시감독과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선별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3. 위탁대행 운영상 “을” 에게 현저한 실책이 있다고 “갑” 이 인정할 경우
- 4. 재활용품 및 잔재쓰레기가 사업장내 적체가 심각하다고 “갑” 이 인정할 경우
- 5. 기타 각종 환경관련 문제가 대두되어 “갑” 이 재활용품의 선별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 6. 제20조의 검사 및 지도·감독 결과 계약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 7. “갑”의 시책 변경에 따라 “을”에게 대항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② “을”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갑”이 해지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동의할 수 있다.
  - ③ “을”은 제5조제③항, 제23조제①항, 제23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갑”의 명도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선별업무를 대항하여야 한다.

**제24조(용어해석)**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조문 해석에 있어 “갑”과 “을” 간에 의견이 상이(相異)할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25조(관할법원)**

“갑”과 “을”이 민사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관할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2008. 10. .

갑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을 : (인)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64호

###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께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8.11.18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10월 14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 3. 처분원인 : 건축법위반
- 4. 처분대상

성 명	주 소	위반위치	체납액(원)	압류할 재산내역		
				재 산 구 분	지 번 (차명)	지목/면적 (등록번호)
정장진	인천 부평구 부개1동 396-33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66-10	1,256,500	차량	포터 초장축 슈퍼캡	인천81바16**

- 5. 공고기간 : 2008.10.14. ~ 2008.10.27.
- 6. 게시장소 : 시보,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7.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며, 납부의사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2)560-471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867호

### 재결서정보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나진포천하천정비공사 1,2차」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재결서 정보를 토지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사 업 명 : 나진포천하천정비공사 1,2차
-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3. 공 고 기 간 : 2008. 10. 15 - 2008. 10. 29 (15일간)
- 4. 재결서 정보 수령장소 : 서구청 건설과
- 5.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비 고
남상신	인천 서구 마전동 568-4	1차
지병국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101-2	2차
지성환	미합중국 네덜란드 20878 게이더스버그시 리닝오크가 52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건설과(032-560-4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873호

### 압류 차량 매각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제7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다 음 -----

1. 공매대상재산(차량) : 따로 붙임 목록 참조(7대)
2. 공고 및 입찰등록 기간 : 2008. 10. 14 - 2008. 10. 27 (13일간)
  - 가. 입찰 및 개찰장소 : 인터넷공매([www.automart.co.kr](http://www.automart.co.kr))
  - 나. 입찰신청서 및 입찰참여 마감 : 공고일 ~ 2008. 10. 27. 24:00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입찰신청서 동시작성 및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신청서 미 작성자 및 입찰보증금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다. 입찰결과발표 : 2008. 10. 28. 15:00  
(주)오토마트 홈페이지 발표하며 유찰시 재공매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 이후 별도 공고
3. 입찰방법 : 인터넷 공매에 의한 방식
  - \*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 ([www.automart.co.kr](http://www.automart.co.kr))
    -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 선택차량은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2-734806 예금주:서구청세무과로 본인명의로 입찰보증금을 입찰가액의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입찰권이 부여되며, 기한내 미납부자나 타인 명의로 입금시는 입찰 참가 자격이 취소됩니다(입찰신청자와 입금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미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2008. 10. 29. 반환예정

4. **구매대상 차량 보관장소** : 인천 서구 석남2동 642-2 (주)오토마트인천공매차량보관소 (032)578-0442
5. **입찰서의 제출** : 입찰자는 입찰신청서와 입찰참여서 및 입찰보증금을 구매 집행자가 선언한 지정시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 후에는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 및 반환 할 수 없습니다
6. **낙찰자의 결정**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 입찰자(낙찰자가 1인 이라도 유효함)  
 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를 낙찰자 선정
7.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지급하여야 하며, 잔금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한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또한,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매수대금 완납 이전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면 매각결정은 취소됩니다.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8. **구매중지** : 구매진행 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거나, 또는 구매처분의 착오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9. **구매물건의 표시기준** : 구매물건의 표시는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10. **구매재산의 인도 및 명도** : 구매물건의 인도에 대하여 우리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물건소재지에서 원상태로 인도합니다
11. **구매재산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 구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구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구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입찰자의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에 참가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차량이전 후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확인 후 필히 조치 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본 공고상의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제징수법』 및 압류관련 물건별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다.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 제권리의 말소 등록세는 등기권리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구(세무과 ☎ 560-42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공매공고대상차량내역

2008년 10월 (단위:원)

연번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차량번호	공매재산예정가격	권리행시기간	인수날짜
1	홍용석	550922-1221713	인천 서구 521-2 동우아파트 가/208호	27머9143	4,500,000	2008.10.27까지	2008.1008
2	김재현	610805-1345417	인천 서구 연회동 747-7	45가7033	4,000,000	2008.10.27까지	2008.1001
3	박재형	670605-1466441	인천 서구 신현동 146-11	86보8516	1,000,000	2008.10.27까지	2008.0922
4	김행호	670225-1668218	인천 서구 석남동 511-13	인천31구2445	2,000,000	2008.10.27까지	2008.0929
5	장은영	791215-2155013	인천 서구 가정동 555-13 바로크(아)222호	인천33노4522	1,500,000	2008.10.27까지	2008.0926
6	김영옥	700926-1466822	인천 서구 가정동 558-13 명성빌라 1/202호	인천35고1360	700,000	2008.10.27까지	2008.1009
7	윤기창	750124-1258821	인천 중구 무의동 75번지	인천35라1042	3,000,000	2008.10.27까지	2008.0929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 8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목적 및 구성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계약, 심의위원회, 정년에 관한 사항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지휘감독, 복무, 의무, 훈련 및 대회참가 등에 관한 사항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징계, 면직에 관한 사항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설치운영, 관용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보수, 실비보상, 보상금, 우수선수 유치비에 관한 사항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의료보상, 훈련복 및 장비지급, 퇴직금에 관한 사항
- 조문수 20조, 부칙 2조, 별표 8, 별지 14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3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운동경기부는 “여자 인라인롤러부”를 설치하고, 경기지도자(이하 “감독”이라 한다) 1명, 선수 6명 이내, 조리사 1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계약)** 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 자격을 갖춘 감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한 자와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추천서 또는 지원서를 검토하여 우수선수를 임용한다.

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서, 별지 제9호에 의한 서약서
2. 일반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원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③ 감독 및 선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1. 이력서 1통
- 2.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
- 3. 서약서 1통
- 4. 경력증명서 1통
- 5. 건강진단서 1통
- 6.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7. 명함판 사진 2매

- ④ 감독 및 선수의 계약 또는 재계약의 경우 감독은 3년 단위로, 선수는 2년 단위로 하며, 계약 또는 재계약 개시 전년도 12월중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운동경기부 입단계약서에 따라 입단 약정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⑤ 임용된 감독 및 선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감독, 선수의 재계약, 등급조정, 징계의결
  - 2. 제11조제1항에 의한 감독 및 선수의 면직에 관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직하는 사항
  - 3. 기타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및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체육관련인사 및 서구의회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청소년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정년)** 감독, 선수 및 조리사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감독 - 60세
- 2. 선수 - 35세(다만, 선수의 기량이 우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3. 조리사 - 57세

**제6조(지휘감독)** ① 운동경기부는 문화체육과 소속하에 두고 감독 및 선수는 문화체육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감독은 선수 발굴, 육성 및 지도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 감독은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주장은 감독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복무)** ① 감독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하며,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무일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③ 감독 및 선수는 연간 20일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가 및 경조사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와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감독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
- 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
- 3.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감독 및 선수가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고, 휴가일수는 별표 1과 같다.

⑥ 감독 및 선수는 휴가 등을 실시하기 전 복무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 기재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한다.

⑦ 감독 및 선수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8조(의무)** 감독 및 선수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성실의 의무 : 감독 및 선수는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의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품위유지의 의무 : 감독 및 선수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3. 복종의 의무 : 감독 및 선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4. 기타 :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훈련 및 대회참가)** ① 감독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선수 훈련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일정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훈련 및 대회 참가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①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 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3. 병가 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 ② 징계는 해임, 감봉, 훈계로 구분한다.
-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경미한 사고로써 정상 참작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훈계한다.
- ④ 징계로 해임된 감독 및 선수는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면직)** ①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 1.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 2. 감독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 3. 각종 경기를 통하여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 4. 지정된 숙소에서 무단이탈 하였을 때
-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6.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 7.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감독자의 명에 불응하였을 때
- 8. 감독은 전국체육대회에서 3년간 1회 이상 3위 이내 입상하지 못하였을 때
- 9. 선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2년간 1회 이상 3위 이내 입상하지 못하였을 때
- 10.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 11. 조리사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거나 질병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면직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른 팀으로의 입단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급한다.

**제12조(합숙소 설치 운영)** ① 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 운영한다.

② 합숙소에는 선수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조리사를 둘 수 있으며, 조리사의 임용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조리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를 구비하여야 한다.

- 1. 이력서 1부.
- 2. 반명함사진 1부.
- 3. 건강진단서 1부.

**제13조(관용차량운행)** 운동경기부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원활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구입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수 등)** ① 감독, 선수 및 조리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감독은 3년 단위로 선수 및 조리사는 1년 단위로 계약한다. 단,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한 것으로 하며, 구에서 원할 경우 우수한 선수(전국대회 1위 입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 장기계약 할 수 있다.

② 감독, 선수 및 조리사의 월 보수는 연봉액 중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의 12분의 1로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연봉결정

- 1. 감독 및 선수의 연봉(조리사 제외)은 별표 2의 점수산정 기준표에 따라 배점하며 감독의 경기력 점수산정은 선수 전원의 3년간 평균점수로 한다.
- 2. 등급별 연봉액에 대한 등급결정은 별표 3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할 수 있다.
- 3. 선수(감독포함)가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여 4회 이상 대회에 출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도 성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보상)** ① 감독 및 선수가 전지훈련, 출전 및 우수선수 유치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하되, 감독은 5급 공무원, 선수는 7급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섭취로 체력 및 경기력 유지를 위하여 100분의50을 가산 지급한다.

**제16조(보상금)** ① 감독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전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② 선수가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양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상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감독의 각종대회 입상보상금은 해당부 선수 중 최고 수혜선수와 동일금액을 지급한다.

③ 입상보상금과 별도로 감독 및 선수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격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 한다.

1. 해당부 종합우승 : 감독 및 선수 전원 30만원
2. 한국신기록 수립시 : 100만원
3. 아시아신기록 수립시 : 300만원
4. 세계신기록 수립시 : 500만원

**제17조(우수선수 유치비)**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우수선수 유치를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우수선수 유치비는 최초 임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선수에게 지급한다. 다만, 최초 계약된 선수는 2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기간내 퇴직시에는 연봉 및 우수선수 유치비의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의료보상)** ① 감독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감독, 선수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훈련복 및 장비지급 등)** ① 감독 및 선수에게 각종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훈련복과 장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훈련복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복 중 유니폼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 ③ 감독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훈련복 및 장비구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퇴직금)** ① 운동경기부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퇴직자의 퇴직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되어야 한다.

③ 퇴직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서구청운동경기부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된 운동경기부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특별휴가일수

구 분	휴가일수		
	종합우승	단체1위	개인1위
전국규모대회	3	2	1
전국체전	7	4	3
세계대회	10	7	5

## [별표 2]

## 점수산정기준표

직 책	등 급	연 봉 액		비 고
		점 수	보수액	
감 독	A	90점이상	46,000,000	
	B	80점이상 90점미만	43,000,000	
	C	70점이상 80점미만	40,000,000	
	D	70점미만	37,000,000	
선 수	A	90점이상	40,000,000	
	B	80점이상 90점미만	36,000,000	
	C	70점이상 80점미만	32,000,000	
	D	60점이상 70점미만	28,000,000	
	E	60점미만	24,000,000	
조리사			10,560,000	

※ 감독의 점수산정은 전국체전 단체전 출전선수의 평균점수로 한다.

[별표 3]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연봉등급 및 배점표**

구분	배점	기 준	비고
경 력	10	○ 선수단 근무경력(우리구 입단) - 3년이상 : 10 - 2년이상 3년미만 : 8 - 1년이상 2년미만 : 6 - 1년미만 : 4	
경기력	70	○ 최근 1년간 전국대회 입상경력 (일반부,대학부,고등부 활동포함) - 국제대회 단체·개인전 : 1위 40, 2위 30, 3위 20 - 전국체전 단체·개인전 : 1위 30, 2위 20, 3위 15 - 전국규모 단체·개인전 : 1위 18, 2위 15, 3위 13	
복무등	20	○ 복무상황 등 - 근무태도 : 10점(탁월10,우수9,보통8,미흡7,부진6) - 기여도 : 5점(탁월5,우수4,보통3,미흡2,부진1) - 장래성 : 5점(탁월5,우수4,보통3,미흡2,부진1)	

※ 선수단의 연봉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가능

[별표 4]

**대회출전 선전장려금 지급액**

구 분	국 제 대 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비 고
금 액	선수당 500,000원	팀당 500,000원	팀당 300,000원	

※ 국제대회 :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기타 국제대회는 전국규모대회와 동일하게 본다)

[별표 5]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구분	지 급 기 준				
입 상	종 목 별		지 급 액 (단위 : 원)		
			1 위	2 위	3 위
	선수	단체	400,000	300,000	200,000
		개인	300,000	200,000	100,000

- 비고 1) 입상보상금 지급은 동일인이 단체분야와 개인분야에서 각각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각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2) 단체·개인전 분야별로 전국체육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100%, 국제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200%를 추가 지급한다.

[별표 6]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급수	유 치 비 기 준	지 급 액
1급	○ 최근 2년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자	50,000,000원
2급	○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자 ○ 지난 1년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2회이상 입상 경력자 ○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당해 종목 한국신기록 수립자	20,000,000원
3급	○ 지난 1년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1회이상 입상 경력자 ○ 지난 1년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한 자	15,000,000원
4급	○ 지난 1년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3위이내의 입상 경력자	10,000,000원

[별표 7]

**훈련복 지급기준(연간)**

구분	츄리닝	유니폼	땀복	잠바	파카	운동화	가방	T셔츠	기타
지급량	3	1	2	1	1	2	1	3	필요시

[별표 8]

1. 유니폼 만드는 방법

구분	만드는 방법
1번	<p><b>앞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깃은 검정색, 전체적인 색상은 진남색으로 한다.</li> <li>2) 깃 아래부터 허리까지 방패모양의 무늬를 새기고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며, 그 테두리는 하늘색으로 한다.</li> <li>3) 양어깨에서 팔 끝까지 선을 새기고 색상은 하늘색으로 한다.</li> <li>4) 옆면 허리부터 무릎까지 길게 세로무늬를 넣고 색상은 앞면부터 하늘색, 흰색, 파란색으로 한다.</li> <li>5) "Incheon"을 가슴과 팔 및 다리의 옆면에 입체적으로 새기고 색상은 진남색으로 한다.</li> <li>6) 양쪽 팔 끝부분에 서구마크를 새기고, 서구마크 아래에 "서구"를 새기며, 색상은 하늘색으로 한다.</li> </ul>
	<p><b>뒷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등에 "Incheon"을 입체적으로 새기고 색상은 진남색으로 한다.</li> <li>2) "Incheon"아래에 서구마크를 새긴다.</li> <li>3) "서구"를 서구마크 아래에 새기고, 색상은 하늘색으로 한다.</li> <li>4) 허리에 "Incheon"을 새기고 색상은 하늘색으로 한다.</li> <li>5) "서구"아래부터 허리 위까지 옆으로 가로무늬를 새기고 색상은 위로부터 파란색, 하늘색, 흰색, 회색, 파란색으로 하며, 파란색 무늬는 옆면의 파란색 무늬와 이어지게 한다.</li> <li>6) 양어깨에서 팔 끝까지 선을 새기고 색상은 하늘색으로 한다.</li> <li>7) 허리부분에 주머니를 만든다.</li> </ul>

구 분		만 드 는 방 법
2번	앞 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깃은 검정색으로 하고, 허리위의 부분은 노란색으로 하고, 아래 부분은 검정색으로 한다.</li> <li>2) 왼쪽 가슴에 용 모양의 무늬를 새기고 색상은 빨간색으로 한다.</li> <li>3) 옆면의 양 어깨에서 팔 끝까지 위에서 아래로 선을 새기고 색상은 빨간색으로 한다.</li> <li>4) 오른쪽 팔끝과 왼쪽가슴에 서구마크와 “서구청”을 새기고 글자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li> <li>5) “Incheon”을 팔과 다리 옆선에 새기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고, 글자 테두리는 흰색으로 한다.</li> <li>6) 오른쪽 다리 끝에 서구마크를 새기고 색상은 연노란색으로 한다.</li> <li>7) 옆면의 겨드랑이부터 무릎까지 세로선을 새기고 허리위의 부분은 검정색으로, 아래 부분은 빨간색으로 한다.</li> <li>8) 전체적으로 승리모양의 무늬를 새기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li> </ol>
	뒷 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리위의 부분은 노랑색으로 하고, 아래부분은 검정색으로 하며, 등에 용 무늬를 새기고 무늬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li> <li>2) 등 중앙의 윗 부분에 회오리 무늬를 새기고 색상은 빨강색 으로 하며, 무늬위에 “인천서구청”을 새기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li> <li>3) 허리에 “인천서구청”을 새기고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li> </ol>

2. 유니폼의 모형

구분	모형		
	앞면	뒷면	옆면
1번			
2번			

(별지 제1호서식)

# 추천서

○ 주소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상기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부 감독(트레이너)으로(로) 추천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인천광역시 ○○ 경기단체장 (인)

(별지 제2호서식)

# 지 원 서

- 종 목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본 적 :
- 주 소 :

상기 본인은 현재 \_\_\_\_\_에 소속중인 졸업 예정자로서 \_\_\_\_\_단 (부)로 입단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지원하며, 학교장(총·학장)의 추천과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본 인 : (인) (좌우무인)  
 보호자 : (인) (좌우무인)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학 교 명 : (인)  
 학교장(총·학장) : (인)

위에 의거 \_\_\_\_\_단(부)에 입단을 승낙합니다.

입 단 단 체 :  
 대 표 자 : (인)

중앙경기단체 확인란	
	교부자인

발급번호	
------	--

※대한 체육회 서식사용

(별지 제3호서식)

# 추천서

- 주 소 :
- 종 목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상기자는 \_\_\_\_\_ 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인천광역시 ○○ 경기단체장 (인)

(별지 제4호서식)

# 지 원 서

- 종 목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본 적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인라인롤러부)에 입단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일, 입단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인)(좌무인)  
 보호자 (인)(우무인)

##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최종학력			
경 력			
주요경기 실 적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뒷 면>

신분증
사진
No.
성명 :
인천광역시서구청

소 속 : _____
직 명 : _____
성 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세로 63×90mm)

(별지 제6호서식)

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부 명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 글)	본관	성별	생년월일	본적	생활근거지				호주성명 및 관계		
				주소							
병 력 관 계	해당 없음	미 필			복 무						
		역종	체격등위	미필사유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영년월일	전역년월일
개 인 신 상 관 계	신체 사항	신 장	체 중	시력	색 맹	혈액형	건강상태	종 교	취 미	특기	
	재산 사항	동 산		부 동 산		가 옥		부업명	부업일수	재산총액	
	정 당 사회단체	단 체 명	직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단 체 명	직 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가 족 사 향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직장직위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직장직위	
학 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과목			학위	기 간	학교명 및 전공과목			학위	
전 력	기 간	근무처		직위	기 간	근무처		직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임면사항	임용년월일	직 위		확 인	퇴직년월일	직위		확 인
예	년월일	호봉	근무일수	확 인	년월일	호봉	근무일수	확 인
경기실적(임면전)	기간	대회명	장소	전적	기간	대회명	장소	전적
임용후경기실적	기간	대회명	장소	전적	기간	대회명	장소	전적





(별지 제9호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인라인롤러부)에 입단을 지원하면서 관계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단을 명하여도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월 2회 이상 훈련에 불참하거나 무단지각 및 조퇴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훈련 및 대회출전에 사유없이 불참한 경우
4. 직장인,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년 월 일

소 속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여자인라인롤러부)

주 소 :

직 명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는(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따라 운동경기부(감독, 선수)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의 증명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상호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및 의무)** 운동경기부 발전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합의된 연봉을 지급할 의무를 갖고, 을은 갑의 규정을 준수하며 갑을 위하여 그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준연봉)** 갑은 제2조의 계약기간에 을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일금        원 (세금포함)을 기준연봉으로 하여 이 계약서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연봉의 조정)** 갑은 이 계약에 의한 을의 이행 정도와 경기실적 결과에 따라 연봉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갑과 을은 연봉지급방법에 대하여 양자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한다.

- 1. 지급방법 : 연봉액중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12회로 분할 지급한다.
- 2. 지급시기 :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갑이 을에게 출전 요구한 경기종료 후 그 성적 여하에 따라 갑은 을에게 포상금(입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갑은 규정과 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을로 하여금 철저히

히 이행토록 하여 갑에게 명예훼손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오지 않도록 독려할 권리가 있는 반면, 제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 을의 이익보호와 을의 권리 행사에 적극 협조한다.

② 을은 규정과 계약서상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계약기간동안 갑이 요구하는 경기 및 갑의 훈련을 포함한 모든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을은 갑의 의무이행 도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갑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을에게 수혜자격이 있다. 다만, 을과 갑의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건강을 해치는 어떠한 활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5. 을은 갑의 규정 및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훈련과 관련된 비밀이나 내부적 사항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지불의 한계)** 을은 제3조 및 제6조에 명시된 것 이외의 보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사고시 보수지급)** 을(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부 활동이 불가능하였을 때 31일째 되는 날부터 훈련 및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1년을 기준으로 연봉의 330분의 1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상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활동경비의 부담)** 갑은 계약에 명시된 연봉외에 계약기간동안 을이 갑을 위하여 전지훈련, 대회참가로 출장하는 경우의 활동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를 부담한다.

**제11조(용기구)** 갑은 훈련 또는 경기에 필요한 용기구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상해보험)** 을은 계약기간중 갑이 실시한 훈련 및 경기로 인하여 상해(사망 포함)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상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갑이 부담할 수 있다.

**제13조(건강진단)** 을은 계약 체결전 육체 및 정신적인 면에 대한 결함 유무를 증명하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 그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을의 계약위반)**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다음의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계약을 파기한다.
2. 갑이 입은 피해액의 보상에 필요한 금액을 을로부터 배상 받는다.

**제15조(계약갱신)** 선수계약 갱신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16조(계약해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제10조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 내용에 저촉될 때에는 계약 만기시 계약을 자동 해지한다.

**제17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분쟁 발생시에는 인천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서 구 청 장 : (인)

“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지 제13호서식)

###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인라인롤러부) 훈련일지

담당자	체육청소년 담당	문화체육 과장	결 재

년 월 일

작성자 : (인)

참석 현황	참석대상	참석인원	불참자	불참자내역				
				계	교육	연가	병가	기타
훈련 내용	시 간		훈련내용		장 소			
특이 사항								

